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21 선고 2014가합41013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6. 4. 12 선고 2015나22534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21 선고 2014가합41013 판결

전 문

원고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피고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5. 6. 4.

판결 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45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대진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2. 31. 대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신월성 1호기, 2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시운전 정비공사' 중 2차측 기계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정비 수행 지원 업무 등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09. 12. 31.	1,123,936,000	2010. 1. 1. ~ 2013. 1.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
2	2011. 5. 20.	1,181,025,000	2010. 1. 1. ~ 2013. 1. 31.	제1차 변경계약
3	2012. 2. 14.	1,222,118,000	2010. 1. 1. ~ 2013. 1. 31.	제2차 변경계약
4	2012. 8. 20.	1,242,989,000	2010. 1. 1. ~ 2013. 1. 31.	제3차 변경계약
5	2013. 8. 19.	1,444,531,000	2010. 1. 1. ~ 2013. 10. 31.	제4차 변경계약
6	2013. 10. 30.	1,444,531,000	2010. 1. 1. ~ 2014. 7. 31.	제5차 변경계약
7	2014. 1. 14.	1,650,297,000	2010. 1. 1. ~ 2014. 7. 31	제6차 변경계약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 귀속한다.

제3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의 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3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1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0이상)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5조(배상)

① 계약일반조건 제37조 또는 제38조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다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1. 작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 계약 역무범위 미수행에 따른 계획공기 지연 유발에 따른 손해배상금

나. 계약이행보증계약의 체결

1) 대진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24,787,200원, 보증기간 2009. 12. 31.부터 2013. 1. 31.까지,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가, 2011. 5. 20. 제1차 변경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위 2009. 12. 31.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은 해지하고,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변경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2011. 5. 20.	118,102,500	2009. 12. 31. ~ 2013. 1. 31.	신규
2	2012. 2. 15.	4,109,300(합계 122,211,800)	2012. 2. 14. ~ 2013. 1. 31.	증액
3	2012. 8. 22.	2,087,100(합계 124,298,900)	2012. 8. 20. ~ 2013. 1. 31.	증액
4	2013. 8. 19.	124,298,900	2013. 2. 1. ~ 2013. 10. 31.	기간연장
5	2013. 8. 19.	20,154,200(합계 144,453,100)	2013. 8. 19. ~ 2013. 10. 31.	증액
6	2013. 12. 17.	144,453,100	2013. 11. 1. ~ 2014. 7. 31.	기간연장

2)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첨부된 보증약관에서 보증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주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②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③ 보증금 지급한도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손해액으로 합니다

제4조(실제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

① 조합은 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보증채권자와의 보증계약은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청구

1) 대진건설은 2014. 1. 15. 원고에게 경영상의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4. 1. 16. 대진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18. 위 보증금 지급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사고의 발생 주장

원고는, 대진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포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보증금은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실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및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대진건설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144,45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대진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지체상금 40,446,860원(= 계약금액 1,444,531,000원 × 지체상금률 0.1% × 28일)의 손해를 입었고, '신월성 1호기, 2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시운전 정비공사' 중 2차측 기계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정비 수행 지원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주식회사 제이에스플랜트와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80,18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 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364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6차 변경계약은 대진건설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전날에 체결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6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1,650,297,000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위 증액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피고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범위는 제4, 5차 변경계약에 의한 계약금액, 계약기간이고, 대진건설이 업무수행을 포기할 당시까지의 기성금액은 1,470,613,100원으로서 제5차 변경계약상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점, ④ 피고의 보증약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대진건설의 제5차 변경계약에 따른 기성금이 약정금액에 이르렀을 때가 실제이행기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기간도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진건설은 제5차 변경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관한 주장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신월성 1호기, 2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시운전 정비공사'는 장기계속계약이고, 위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도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계약의 특성상 계약금액 및 보증기간이 유동적이어서 계약금액의 증액 및 기간연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2014. 1. 14.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제6차 변경계약을 피고가 승인한 적이 없더라도 제5차 변경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제6차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공사내용 등을 변경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3447 판결 참조), 제6차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공사금액은 피고의 보증책임이 가중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종혁

판사윤봉학

판사지충현